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사 립 학 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‘감정평가업자’를 ‘감정평가법인등’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(안 제11조제7항 신설)

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.”

나. 용어의 정비(안 제4조제3항, 안 제11조제1항제2호)

‘감정평가업자’를 ‘감정평가법인등’으로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대학 설립 · 운영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2. 15. ~ 3. 26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·결산서 등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2.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재산 처분 동의서 등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부 칙

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 제7호의 재산평가조서 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감정평 가업자</u> 의 감정평가서(이하 “감 정평가서”라 한다)를 첨부하여 야 한다. ④ · ⑤ (생 략)	제4조(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감정평 가법인등</u> ----- ----- -----.
제11조(기본재산의 처분) ① 법 제 28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· 증여 또는 교 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 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감정평가 업자</u> 의 감정평가서(교환의 경 우에는 쌍방의 재산) 3. ~ 5. (생 략) ② 삭 제 ③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기본재산의 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감정평가 법인등</u> ----- -----
	3. ~ 5. (현행과 같음)
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	<u>⑦ 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</u>

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·결산서 등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2.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재산 처분 동의서 등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5